

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추가 합격자 공고

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추가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5일

국립고궁박물관장

□ 최종 합격자 명단

* 괄호 안은 핸드폰 뒷번호

| 응시분야 | 고용형태 | 응시번호 | 합격자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
| 안전관리원(3교대) | 공무직 | 6 | 임○웅(1299) |

□ 임용일

- 수습 임용일: 2022. 2. 3.(수) (예정)
- 정규 임용일: 수습일로부터 3개월 * 정규직 전환심사 합격자에 한함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
- 제출기한: 2022. 2. 3.(수)
- 제출장소: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
- 제출서류
 - 채용신체검사서 1부
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* <붙임1> 양식(3p)에 작성
 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*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
 -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 - 최종학력증명서 1부
 - 결격사유 확인서 1부
 - 신원진술서(약식) 2부 * <붙임2> 양식(4p)에 작성
 - 반명함 사진 이미지 파일(jpg) * 이미지 파일이 없는 경우 사진 3매 제출
 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

□ 공지사항

-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신원조회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 결과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,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 제한명령을 받은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☎ 02-3701-7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채용서류 반환 안내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2년 7월 19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<붙임3>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방문, 팩스(02-732-0775)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.
-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2년 7월 19일까지 보관하게 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 처리 할 예정입니다.

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2. 신원진술서(약식) 1부.
3. 결격사유 확인서 1부.
4.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. 끝.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근로계약 및 인사업무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| 연번 | 행정정보명 | 연번 | 행정정보명 |
|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|
| 1 | 주민등록표 등·초본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-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 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| | | |
|-----|----|------------|
| 대상자 | 본인 | 성 명 : |
| | | (서명 또는 인) |
| | | 생년월일 : |
| | | 전화번호 : |

(붙임 2)

결격사유 확인서

○ 성명:

○ 생년월일:

본인은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 . . .

확인자: (인)

문화재청장 귀하

(붙임 3)

신원진술서(약식)

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
| 성명 | | 한자 | | 주민등록번호 | | <p>[사진]</p> <p>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 · (3.5cm×4.5cm)</p> | |
| 등록기준지 | | | | | | | |
| 주소 | | | | | | | |
| 실거주지 | | | | | | | |
| 직장 | 직장명 : 소재지 : | | | 연 락 처 | 직장전화 : 휴대폰 : E-mail : | | |
| 학력 | 학교명 | 기간 | | 전공학과 | | 학위 | |
| | | .. | ~ | .. | | | |
| | | .. | ~ | .. | | | |
| | | .. | ~ | .. | | | |
| 경력 | 기관·업체 및 정당·사회단체명 | 기간 | | 직책(직급) | | 상별관계(일자) | |
| | | .. | ~ | .. | | | |
| | | .. | ~ | .. | | | |
| | | .. | ~ | .. | | | |
| 해외 거주 사실 | 거주국가 | 기간 | | 거주목적 | | 동반가족 | |
| | | .. | ~ | .. | | | |
| | | .. | ~ | .. | | | |
| | | .. | ~ | .. | | | |
| 병역 | 군별 | 기간 | | 병과 | 최종계급 | | 미필사유 |
| | | .. | ~ | .. | | | |
| 배우자 부모 자녀 | 관계 | 성명 | 생년월일 | 관계 | 성명 | 생년월일 | |
| | 배우자 | | | 子 | | | |
| | 父 | | | 子 | | | |
| | 母 | | | 子 | | | |
| <p>1.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>2.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</p> | | | | | | | |
| 작성자 | | | 성명 | | 년 | 월 | 일 |
| | | | | | 인(서명 또는 날인) | | |

(붙임 4)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
| 접수번호 | | 접수일자 |
| 청구인 | 성명 | 수험번호 |
| 주 소 | | |
| 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 | | |
| 반환청구서류 | | |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